

인천지방법원 2022. 3. 17 선고 2021가단248458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3. 17.

주 문

1. 별지 목록에 나오는 다세대주택 중 2/9지분에 관하여, ① C과 피고 등이 2017. 9. 7.에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함과 아울러, ②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<청구원인>에 나오는 바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관근

별지